

# 『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2. 제안이유

-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상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위치(안 제2조)
-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민간 위탁근거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제7조)
-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·반환 규정(안 제10조~제13조)
-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등(안 제14조~제15조)
-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(안 제1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」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  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제정조례안은

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, 센터의 위치,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서 관리·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시설의 운영에 따른 개장일, 개장시간, 사용료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및 배상,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,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및 위탁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# 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수상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미시 임수동 382-2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